

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(안)

◇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노동·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.

I 사업개요

□ 사업명 :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

□ 추진근거 : 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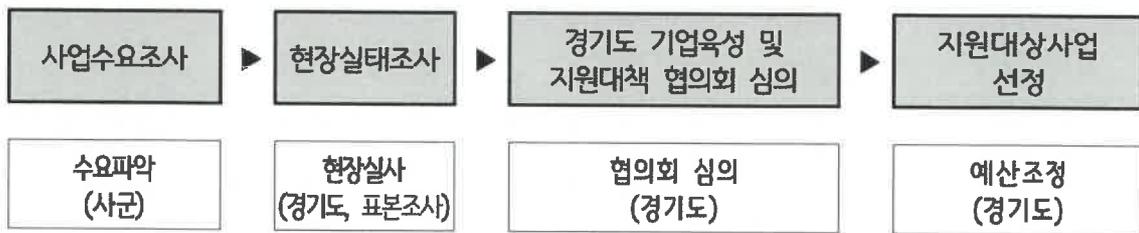
◆ 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9조(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), 제11조(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 운영 등)에 의거 기업경영 관련 기반시설 등의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「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」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사업기간 : 2021년 1월~12월

□ 사업내용

- 기반시설 개선사업 :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
- 노동환경 개선사업 :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
-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: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
- 작업환경 개선사업 :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

※ 지원절차



□ 선정기준 : 사업분야별 심사표(참고1)

□ 재원비율 : 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

※ 단,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시·군별 차등보조를 적용

※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% 하향(도비 4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30%)

□ 사업주체 : 시·군

II 사업별 지원기준

구 분	지원대상	지원내용	지원요건	재원비율	지원한도
기반시설 개선사업	중소기업 밀집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로 확·포장 상·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시급성, 주변환경, 시·군 재정여건, 과거 지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참여기업 10개소 이상 지원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중인 사업 - 시설이 양호한 사업 - 사유지 사용승인·동의가 어려운 사업 - 총사업비 7억원 이상 및 연차별 추진 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·군 차등보조율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비 2억원 이내 (총사업비 7억원 이내)
노동환경 개선사업	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·소기업 (제조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숙사, 휴게실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 설치 및 개보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※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으로 총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50억원 이하 기업 지원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 유사사업과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 중복지원 -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-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- 무허가 건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비 30% 시·군비 30% 자부담 4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비 15백만원 이내 ※기숙사 신축의 경우, 도비 30백만원 이내
지식산업 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	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 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차장 및 (주차설비 포함)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·보수 노화 기계설 설비 개보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로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지원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 유사사업과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 중복지원 -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비 30% 시·군비 30% 자부담 4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비 30백만원 이내
작업환경 개선사업	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 (제조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작업공간 개보수 (바닥, 천정, 벽면, 창호 등) 적재대 작업대 환기·집진장치 LED조명 설치 (작업공간만 해당)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중으로 총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지원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 유사사업과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 중복지원 - 시설이 양호하고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-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- 무허가 건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비 30% 시·군비 30% 자부담 4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비 10백만원 이내

1] 기반시설 개선사업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도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
지원내용	도로 확·포장, 상·하수도, 소교량, 우수관 정비
지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시급성, 주변환경, 시·군 재정여건, 과거 지원실적 등 감안 • 참여기업 10개소 이상, 다수기업 우선 반영
재원비율	2021년 시·군 차등보조율 적용
지원한도	도비 2억원 이내 (총사업비 7억원 이내)
지원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혜효과(수혜기업, 종업원 등)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 •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·동의를 완료된 사업 • 현지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100%인 시·군 사업 •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%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%이상인 사업 •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¹⁾ 비율이 20%이상인 사업 •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%이상인 사업
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초 시·군 자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 •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, 사용 승락 등 동의확보가 어려운 사업 •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• 상수도 설치 신청기업의 지역이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보급지역 •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경우

1) 뿌리기업 :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기업

② 노동환경 개선사업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·소기업(제조업)
지원내용	<p>기숙사, 휴게실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, 정화조 등 설치 및 개·보수, 기숙사 신축,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</p> <p>※ 지원허용 : 보일러,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</p> <p>※ 지원제외 : ① TV, 냉장고, 선풍기, 에어컨, 식탁 등의 집기류,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 시설·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</p> <p>《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대상: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※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- 제외대상: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,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, 공사추진 중인 경우
지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 •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•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50억원 이하 기업
재원비율	<p>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</p> <p>※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% 하향(도비 4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30%)</p>
지원한도	<p>도비 15백만원 이내</p> <p>※ 기숙사 신축의 경우, 개소 당 <u>도비 30백만원</u> 이내</p> <p>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</p>
지원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 •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•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, 어린이집 설치 기업 •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
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 유사사업과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 중복지원 •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•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•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를 불가능한 사업 •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•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•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

3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도내 소재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지원내용	주차장(주차설비 포함)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, 노화 기계설 및 전기 설비 개보수,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※ 지원제외 :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 시설·설비 개·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
지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•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
재원비율	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
지원한도	도비 30백만원 이내 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
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 유사사업과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 중복지원 • 시설이 양호하여 개·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•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•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•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•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•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

4] 작업환경 개선사업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(제조업)
지원내용	<p>작업공간 내부(바닥, 천장, 벽면, 창호 등) 개보수,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, 적재대, 작업대, 환기·집진장치 설치, LED조명 설치,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(작업공간만 해당: 연구실, 사무실 제외)</p> <p>※ 지원제외 : 소모품, 생산 설비,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(예) 이동식 공구함, 이동식 대차, 공구·기계류 부착 등 주문제작 작업대</p>
지원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 •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
재원비율	<p>도비 3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40%</p> <p>※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% 하향(도비 40%, 시·군비 30%, 자부담 30%)</p>
지원한도	<p>도비 10백만원 이내</p> <p>※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<u>도비 13백만원 이내</u></p>
지원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이상인 기업 •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²⁾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•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³⁾, 어린이집 설치 기업 •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
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 유사사업과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 중복지원 •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•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•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•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•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•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

2)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: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, 근무환경,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

3)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: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2.9% 이상 장애인 고용